

---

#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

---



**화천소방서**  
**[소방행정과]**

#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

- ◆ 깨끗한 청사를 만들기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청사환경 및 강원도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

## I. 추진개요

### 1] 관련근거

- 도 환경과-4773(2021. 2. 10.) 「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협조 요청」
- 도 환경과-21120(2021. 8. 17.) 「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계획 적극 협조 요청」
- 화천군 환경과-30425(2021. 8. 23.) 「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(국무총리훈령) 제정·시행 알림」

### 2] 추진배경

-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1회용품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“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”에 동참하고자 함

### 3] 1회용품 사용실태

<p>사무실</p>	 <p>- 다류 음용 시 종이컵을 사용하거나 민원인 응대 시 사용</p>
------------	--

<p>회의·행사 시</p>	  <p>-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 시 대부분 1회용 접시·음료수·생수병 제공</p>
----------------	--

## II. 추진계획

- 1 시행시기: 2021. 12. 1.(수) ~ ※ 부서별 보유 1회용품 소진 시 부터
- 2 추진대상: 전 부서
- 3 적용물품: 1회용품
  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5조에 따른 제품
  - 1회용컵·접시·용기·식기, 1회용봉투, 병입수(페트병), 풍선, 우산 비닐

## III. 추진방법

### 1 사무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

<p>개인용 컵, 텀블러 사용 (직원)</p>	 
<p>- 전 직원이 개인용 컵, 텀블러를 준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 ※ 머그컵 활용(사기진작 격려물품: 2021. 11. 29. 배부)</p>	

<p>다회용 컵 제공 (민원인)</p>		
<p>- 민원인용 컵을 구입·비치하여 응대 시 사용</p>		

## 2 회의·행사 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

<p>다회용 접시, 용기 비치</p>		
<p>- 다회용품·접시·용기 등 적극 사용(1회용 용기 사용 자제)</p>		
<p>대용량(다회용) 음료수 비치</p>		
<p>- 큰 용량의 음료수 비치·사용(병입수[페트병] 사용 자제)</p>		
<p>내부 회의 시 개인용 컵 지참</p>		
<p>- 참석자에게 개인용 컵을 지참토록 안내 - 미 지참 시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활용</p>		

**“종이 없는 회의” 활성화**

-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흑백 및 양면 인쇄(컬러 및 단면 지양)

### ③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(사무용품 등)

-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(Good Recycled, GR)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
## IV. 행정사항

① 사무용품 등 구입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협조(전 부서)

②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계획에 적극 동참(전 직원)

- 붙임 1.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(총리훈령) 1부.  
 2.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(실천지침 제5조 관련) 1부. 끝.

**□ 국무총리훈령 제788호****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**

제1조(목적)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

가. 「정부조직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
다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

라.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

마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
바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2. “1회용품”이란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

제3조(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) 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(공원·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·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1회용품

2. 페트병(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)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

3. 풍선

4. 우산 비닐

②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·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·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(喪禮)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④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·식당·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다회용품 등의 사용) 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·장바구니·음수대·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·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·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,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,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)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1.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(Good Recycled, GR)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
제6조(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) ①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

## 2. 홍보물 등 관련 정보

제7조(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)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「정부업무평가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.

제8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□ 재활용제품**

①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
- 환경표지(<http://el.keiti.re.kr/>) - 정보마당 - 인증현황 자료실 - 환경표지(마크) 인증제품 현황 파일 확인\*

\* 품목 필터 방법: 대상제품군 10개 품목(EL101. 인쇄용지, EL102. 사무용지, EL103.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, EL106. 사무용 종이 제품, EL107. 문서파일류, EL172. 가구, EL174. 사무용 칸막이, EL175. 의자, EL177. 학생용 책상 및 의자, EL179. 가구류 부속품) **체크** → **인증사유에 자원순환성 항상 체크**

※ 바로가기 사이트: <http://el.keiti.re.kr/service/page.do?mMenu=6&sMenu=4#>

※ 문의 사항 안내: 환경표지인증 상담센터 / ☎ 1577-7360

②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(Good Recycled, GR)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

-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(<http://www.ripa.or.kr/>) - 인증업체 안내 - 인증업체 소개 - 우수재활용제품(GR) 인증기업 현황 파일 확인\*

\* 품목 필터 방법: 분야 부분 '폐지' 체크

※ 바로가기 사이트: [http://www.ripa.or.kr/?module=Board&action=SiteBoard&BrdNb=7&sMode=SELECT\\_FORM](http://www.ripa.or.kr/?module=Board&action=SiteBoard&BrdNb=7&sMode=SELECT_FORM)

※ 문의 사항 안내: (사)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경영전략부 / ☎ 02-3409-4370